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07 발의연월일: 2021. 2. 8.

발 의 자: 문진석·김민기·박성민

서영석 · 송갑석 · 윤재갑

윤준병·이정문·인재근

조오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과 달리 지자체의 조사권한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자격을 갖춰 등록한 관리 업자에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고, 분쟁 시 지방정부의 지도·감독 권한 을 명시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여 집 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업자에게 관리사무를 위탁

하도록 하며,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의3, 제25조 및 안 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8까지 신설).

- 나. 지방정부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의5 신설).
- 다.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함(안 제52조의5 및 제52조의8).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"집합건물관리업"이란 집합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- 8. "집합건물관리업자"란 집합건물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26조의7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제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분양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면 기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5(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

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며 집합 건물의 시설·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·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을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1.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금에 관한 사항
- 2.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
- 3.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
- 4.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
- 5. 제26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- 6.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규정은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6조의6(관리사무의 위탁)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것을 정한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

탁하여야 한다.

- 제26조의7(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) ① 집합건물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하며,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자본금(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)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·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
 - ③ 집합건물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, 영업의 종류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집합건물관리업자와 관리단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6조의8(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말소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집합건물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
- 2. 영업정지기간 중에 집합건물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
- 3.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을 잘못 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 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
- 4. 집합건물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
- 5.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6. 제26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한 경우
- 7.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- 8.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고,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 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
- ② 제1항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의5제2항 중 "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"를 "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"으로, "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 에 통지하여야"를 "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하여야" 로 한다.

제52조의8제1항 중 "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"를 "제52조의6제5항에"로 한다.

제66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3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26조의5제1항(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,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・ 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4. 제26조의6을 위반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한 자
- 3. 제9조의3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인 계하지 아니한 자
- 9.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. "집합건물관리업"이란 집합
	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
	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
	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
	탁받아 관리하는 업(業)을 말
	<u>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8. "집합건물관리업자"란 집합
	건물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
	26조의7에 따라 등록한 자를
	<u>말한다.</u>
제9조의3(분양자의 관리의무 등)	제9조의3(분양자의 관리의무 등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분양자는 제24조에 따라 관
	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를
	인계하여야 한다.
제25조(관리인의 권한과 의무) ①	제25조(관리인의 권한과 의무) ①
• ② 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관리인이 새로 선임되면 기

<신 설>

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5(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,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 으며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며 집 합건물의 시설・장부・서류 등 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・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을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1. 제17조의2에 따른 수선적립금에 관한 사항
- 2.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

 임에 관한 사항
- 3.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

관한 사항

- 4.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작 성에 관한 사항
- 5. 제26조의2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- 6.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 집회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규정은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레로 정한다.

제26조의6(관리사무의 위탁) 전유 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8 호의 집합건물관리업자에게 관 리단의 사무를 위탁하여야 한 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제26조의7(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) ① 집합건물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관리 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자본금(법인이 아닌 경우 자 산평가액을 말한다)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 이상일 것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·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
 - ③ 집합건물관리업자의 등록의 절차, 영업의 종류와 집합건물 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① 집합건물관리업자와 관리단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

<신 설>

다.

- 제26조의8(집합건물관리업의 등록말소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집합건물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- 2. 영업정지기간 중에 집합건물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
 - 3.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을 잘

 못 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

 점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

 입힌 경우
 - 4. 집합건물 관리 실적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

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② ------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 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한 경우

- 5.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6. 제26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 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한 경우
- 7.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 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 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- 8.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보 고, 자료의 제출을 거부・방 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
- ② 제1항의 등록말소 및 영업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의5(분쟁조정신청과 통지 제52조의5(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----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----답변서를 조 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 하여야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52조의8(조정의 중지 등)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 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 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・③ (생략)

제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52조의8(조정의 중지 등) ①
<u>제52조의</u> 6제5항에
<u> </u>
<u>.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66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26조의5제1항(제52조에서
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
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
령을 위반하거나, 조사 또는
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
<u>한 자</u>
4. 제26조의6을 위반하여 관리
단의 사무를 위탁한 자
② (현행과 같음)
③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<u>3.</u> ~ <u>7.</u> (생 략)

<신 설>

8. (생략)

④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9조의3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의

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

4. ~ <u>8.</u> (현행 제3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)

9.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
10. (현행 제8호와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